

## 古典 古代 奴隸制의 起源과 性格

梁 東 休

노예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적합한 필요충분조건이 있을 때 성립하고 그러한 조건이 쇠퇴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노예제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을 따지는 일은 노예공급원을 살펴보는 차원을 넘어선다. 논리적으로, “노예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선행한다.” 일반적으로 노예에 대한 수요는 첫째, 농업이 주요 경제활동인 시기에 가족노동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토지의 대규모 사적 소유가 집적되어 있을 것, 둘째, 상품생산과 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을 것, 셋째, 내부적 노동공급이 이용 가능치 않아 외부인을 동원해야 할 상황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평창하는데 BC 6세기의 그리스, BC 3세기의 로마가 이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노예는 그 역할에 따라 家內노예와 농업노동을 담당하는 노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범주에서 노예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였다. 실제로 군대를 빼놓으면 노예들에게 배제된 직종은 없었다. 생산부문에서 노예제적 생산은 경영의 대규모화 경향을 가져왔다. 농업부문에서 노예제 대경영을 창출했던 것이다. 노예상태가 의미하는 기본 원칙은 노예가 여하한 법률행위의 주체도 될 수 없으며 그저 주인의 사유물이라는 것이었다. 노예제에 대해서는 균제상태의 심성이 지배적이었고 변할 수 없는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였다. 노예제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사라지자 노예제가 쇠퇴하였다.

### 1. 奴隸, 奴隸制, 奴隸制 社會

고전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제는 “自然에 반하여 어떤 자가 다른 자의 도미니움 (dominium)에 隸屬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학설휘찬』(Digest) 1.5.4.1). 도미니움은 “權力 (power)”으로 번역되지만 재산, 소유의 개념도 내재되어 있다. “自由”건 “不自由”건 간에 타인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노동은 그 노동자가 타인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유독 노예를 농노나 채무노예 등 여타 예속노동자 형태와 구분하는 것은 노예의 權力 缺如 (powerlessness)의 정도가 근본적으로 극단에 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유의 개념이 법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家財奴隸” (chattel slave)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4, s.v. “Slavery,” p. 307). 그러나 패터슨은 소유를 노예제의 구성 요소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소유는 근대 사회경제적 용어로 “權力의 한 뮤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뿐더러 도미니움 개념 자체가 공화정 말기 이전에는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atterson(1982, pp.

20, 31-32)).

인신이 상속, 양도 가능한 動產이므로 노예의 의지, 인격은 노예주의 권위에 예속되며, 노예는 강제에 의한 노동을 수행한다. 농노의 경우 특정 영주에 예속되고 토지에 계박되나 약정된 의무만 수행하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혼재하고 구분하기 힘들었으며 법적 지위와 제도의 유행이 일치한 것도 아니었고 개별 경우마다 특수성이 많았다 (Davis(1966, ch. 2)). 자유민과 부자유민의 다양한 형태가 부분적 충첩 현상을 포함한 스펙트럼에 비유될 수 있다면 노예는 그 한쪽 끝에 위치한다.<sup>(1)</sup> 즉 권력의 비대칭적 분배가 노예제에서는 전적인 독점과 완전한 결여의 양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배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노예 없이 노예주는 자기의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권력의 전무함은 노예가 노예주를 통제하는 비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Patterson(1982, p. 2)).

페터슨에 의하면 이러한 권력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지배력의 창조와 유지를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예가 자기의 이해 관계와 상황을 새롭게 인지하도록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함을 말한다. 노예는 “外部人”이며 태생적으로 소외되고 혈족이나 모든 공동체에서 단절된 “社會的 죽음(social death)”이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힘과 복종을 권리와 의무로 둔갑시키는 문화적 수단, 또는 명예, 자존심이다. 따라서 주인-노예 관계에서 물질적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생산하든 상관치 않는 노예주가 흔히 보인다고 한다. 페터슨의 인신관계 수준에서의 정의를 보자. “奴隸制는 태생적으로 소외되고 일반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된 자들을永久的, 暴力的으로支配하는 것이다.” 제도적 수준에서는 성립, 유행, 쇠퇴 과정을 동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이는 단순한 소유보다는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Patterson(1982, pp. 1-14, 21)).

노예제 사회란 무엇인가? 우선 노예제 사회를 식별하는 몇 가지 접근을 살펴보자. 그 하나는 인구적 접근이다. 단순히 약간의 노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기본적 최소치로서 자의적이지만 의미있는 총인구대비 노예 인구의 비율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노예가 생산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면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스, 로마, 미국남부와 카리브제도, 브라질 등이 이러한 기준에 합치된다. 아우구스투스 대제 시기 이탈리아의 노예 인구 비중은 35%로 추계되는데, 이는 1800년경의 브라질이나 1820년경의 미국남부와 비

---

(1) 스펙트럼의 비유는 M.I. Finley가 선구적이다. 1960년대부터 개진한 그의 시각의 요약을 위해 Finley(1975), 지동식역(1993, 제3장, 특히 pp. 99-102)을 참조하시오.

슷한 수준이다(Bradley(1994, p. 12), 이영훈·양동휴(1998)). 다른 형태의 예속노동과 노예가 공존했던 이집트, 근동, 인도, 중국 등 奴隸所有社會(slave-owning society)와 달리 여타 예속 노동이 사라졌거나 원래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真正한 奴隸制 社會('genuine' slave society)가 바로 이들인 것은 아직 연구하지 않았던 부분이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vol. 14, p. 308).

양적인 통계 이외에 노예들의 위치, 즉 소유주가 누구이고 경제를 비롯한 영역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아도 위의 5개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다. 예를 들어 고전 로마의 경우 농촌과 도시부문의 거의 독점적인 대규모 생산에서 노예제가 지배적이었으며 상류층의 재산으로부터 직접 소득을 창출한 것은 주로 노예였다. 또한 경제 이외의 영역에서도 노예의 위치는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Finley(1983, p. 82)).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로마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이탈리아,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5세기 정도를 진정한 노예제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노예 사회, 노예 경제를 생산과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BC 1세기에서 AD 1세기로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노예제를 권력과 지배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노예제 사회로 간주될 대상이 時空으로 확대된다(Bradley(1994, p. 30)).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정리된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고대(특히 로마)에 노예제가 어떻게 성립, 발전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고대 노예제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사적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임을 밝혀 둔다. 즉 그간 조선시대 奴婢의 역사적 성격을 두고 농노설과 노예설이 대립해 왔으며 이에 따라 조선 사회가 봉건 사회인가 노예제 사회인가 하는 거창한 논란이 축적되어 온 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지역·민족에서 성립한 노예제와의 비교사적 검토가 도움이 될 것이다. 고대 노예제를 간추려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고대 노예제의 성립 과정과 노예의 공급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노예제의 기능, 노예의 역할, 4장에서는 노예들의 생활 조건과 인간적 대우 문제를 다룬다. 5장에서는 노예제의 쇠퇴를 살펴 봄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 2. 古典 古代 奴隸制의 成立

노예제 사회의 도래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조야하지만 근본적인 구분, 즉 자신을 위한 노동과 남을 위한 노동간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자. 여기서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개인적 이득뿐 아니라 가족·친지를 위한 노동을 포괄하고 또 품앗이 같은 협동적

작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남을 위한 노동은 타인이 과실의 일부를 수취해 가는 동시에 노동의 내용과 방법을 관습적으로 직접 통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소농이나 소작농은 조세나 지대를 납부하더라도 남을 위한 노동으로 볼 수 없다.

자원과 권력이 집적되고 집중되는 역사적 단계가 도래하면 개인이나 가족노동 이외의 노동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노동력은 무력이나 법과 관습에 의해 강제적 방법으로 획득된다. 강요된 노동의 형태는 채무노예, 농노, 납공노예, 家財 노예 등으로 다양하나 임금노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임금노동자는 인신 자체가 아니라 그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고대에서는 임금노동이 간헐적이고 임시적이고 한계적이었다. 임금노동이 남을 위한 노동의 특징적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자본제가 발달한 이후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예속노동의 형태로 남을 위한 노동이 등장하고 이들이 점차 노예의 형태로 집중되면서 노예제가 대두하였다. 즉 노예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적합한 필요충분조건이 있을 때 성립하고 그러한 조건이 쇠퇴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고대에서 노예제는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고 빈도가 낮은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이었던 것이다(Finley(1983, pp. 67-77)).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살펴보는 일은 복잡하다. 노예제 사회에서 여타 형태의 예속노동과 노예노동이 병존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자유노동과 노예노동이 공존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그리스,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지에 집중된 고대노예제 사회에서는 매우 장기간 노예인구가 30-35%를 유지하였다. 노예소유주와 노예가 같이 일하는 모습도 기록에 보인다. 또한 이들은 농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대규모 독점생산부문에 위치하였다(Finley(1983, p. 81)).

노예제 사회 도래의 조건으로서 먼저 노예 공급의 원천을 살펴보자. 이는 노예가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과정과 노예주가 노예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대개 ① 전쟁포로 ② 납치 ③ 공물 또는 납세의 형태 ④ 부채 ⑤ 범죄에 대한 형벌 ⑥ 아동의 유기 또는 매매 ⑦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 ⑧ 태생에 의함 등으로, 후자는 전자의 8가지 길을 통해 직접, 또는 ① 제3자로부터의 매수 ② 증여 ③ 노예가 지불수단이 되었을 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Patterson(1982, p. 105, chs. 4-6)).

고대 사회에서 노예 공급을 둘러싼 설명 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정복전쟁에 의한 노예의 量產이다. 즉 서력기원 이전 2세기간에 걸친 정복전쟁이 노예제 성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전쟁의 빈도가 줄어들자 노예의 새로운 공급이 한계에 달하여 노예제가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원정기 이전에도 노예 공급은 충분히 많았으며 아프리카로

부터의 노예무역에는 전쟁이 불필요했다는 기록들을 감안할 때, 정복전쟁이 대토지경영, 이에 연관된 로마노예제의 구조와 성격의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을지라도 노예제의 성립 자체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적절한 조건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노예노동의 “저수지”가 존재했느냐가 적절한 노예 공급의 필요조건임을 비교사적 고찰로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나 아메리카대륙의 노예 공급은 전쟁과는 무관했던 것이다(Finley(1983, pp. 84-85)).

이와 관련하여 로마 노예의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설명이 대두하였다. 즉, “공화정 말기 정복 전쟁과 내전이 깊은 노예를 다량으로 지중해 시장에 공급하였다. 여성과 아동은 노예로 사용되는 예가 비교적 적었다. 공화정 종료후 노예인구의 性比가 균형으로 이행하면서 노예양육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것이 AD 2세기에 오면 BC 1세기에 비해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Bradley(1994, pp. 39-40)) 고대경제의 근간인 농업부문에서는 남성노동이 여성노동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전쟁포로에 의해 지속적으로 충당하였는데 상대적인 평화기에는 공급 유지를 위해 노예인구의 자연증가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정황증거로서 가장 좋은 수량적 사료는 던컨-존스로 생각되는데, 이에 의하면 2세기 성인남성 노예의 법정가격이 2,000세스테르세(HS)임에 비해 양육에 의해 노예 공급이 충분해졌으므로 시장가격은 평균 1,000HS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군인들의 한달 웅급이 1,200HS임에 비추어 보아 매우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다(Duncan-Jones(1982, p. 12)).

또한 구입보다 양육이 더욱 경제적이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실제적 비용은 더욱 낮았을 것이다(Duncan-Jones(1982, p. 50)). 그러나 노예가격은 노예의 질에 따라 편차가 엄청나게 심한 것도 사실이다. 아래는 2세기경 시장가격의 기록 예이다(Duncan-Jones(1982, p. 349)).

700,000 HS	산술가 다프니스, 폴리니에게 알려진 최고가격
100,000 HS	유명한 매춘부를 엘라가발루스가 구입
100,000 HS	그리스 시인들의 작품을 아는 11명의 노예
10,000 HS	판토마임 배우
50,000 HS	의사
2,700 HS	요리사(당시 생선 한 마리 평균 가격 8,000 HS)
6,000-8,000 HS	포도주 제조기술자
기타 4,050, 2,500, 900, 725 등등 다양	

이러한 관찰과 해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복과 해외원정이 끝난 후에도 전쟁은 지속되었다. 둘째, 기원 이전 2세기간에도 자연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 셋째, 로마제국 팽창의 목표는 노예 획득이 아니고 정치적·전략적인 것이었으며 노예공급원으로 전쟁을 미리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포로들을 노예화하지 않고 대량 학살한 경우가 많았다. 넷째, “진정한” 노예제사회 기간(로마의 응성기)에도 독립적 노예무역이나 落兒의 역할이 커으며 자연 증가의 중요성은 미국남부에서나 두드러졌다 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공급원의 결합에 의해 노예노동이 동원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Bradley(1994, pp. 40-43)).

노예상태로 강제된 이들에 대한 영향도 그 과정에 따라 다양했음이 틀림없다. 전쟁이나 납치에 의해 순식간에 자유를 상실한 자들은 친족관계를 잃는 가장 큰 두려움을 비롯하여 자기 존재에 대한 통제력을 갑자기 몰수당한 참화를 입었을 때 폭동이나 집단자살 등으로 대응한 경우가 많다. 노예무역은 지리적 이동에 따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케 했을 것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비인간성 자체도 상당했을 것이다. 태생에 의해 노예가 된 자들(vernae, 주로 종모법에 따랐음)은 비교적 유순하고 복종적이었다고 기록된다(Bradley(1994, pp. 44-56)).

노예제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을 따지는 일은 노예공급원을 살펴보는 차원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 전쟁은 포로를 생산하지 노예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노예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포로가 노예로 변환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논리적으로, “노예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선행한다”(Finley(1983, p. 86)). 일반적으로 노예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이 사회경제적 조건하에 창출되었다. 첫째, 농업이 주요 경제활동인 시기에 가족노동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토지의 대규모 사적 소유가 집적되어 있을 것, 둘째, 상품생산과 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을 것, 셋째, 내부적 노동공급이 이용 가능치 않아 외부인을 동원해야 할 상황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노예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는데 BC 6세기의 그리스, BC 3세기의 로마가 이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Finley(1983, p. 86)).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화에 의해 예속농민들이 자유와 경작권을 획득하고 시민이 되면서 사회내부에서 노동력 공급가능성이 줄어들자 노예제 사회로 새로이 탈바꿈한 것이다. 결국, 기술수준이 낮은 전 산업사회에서 남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유인의 창출이 노예제 사회의 성립을 가져왔다(Finley(1983, p. 90)). 따라서 이 시기에 노동의 이데올로기는 없었으며 여가의 이상, 전쟁의 역할, 노예제가 문명화된 삶의 전제조건이었다. 이것이 결국은 기술 침체와 불평등 옹호 논리로 이어졌다(Austin and Vidal-Naquet(1977, pp. 18-19)).

### 3. 奴隸勞動의 機能

노예제 사회의 인구학적 조건, 즉 전체 인구에서 노예의 구성비가 최소한 20-30%는 되어야 합을 강조하는 설에 대해서는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고대세계에 대하여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노예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노예제 사회의 더 중요한 지표로 삼게됨은 불가피하다. 요컨대 노예들이 그 사회의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가, 달리 말하여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김경현(1999, p. 46)).

노예는 그 역할에 따라 家內노예와 농업노동을 담당하는 노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범주에서 노예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였다. 〈表 1〉의 직업 목록은 농촌 노예의 기능에 관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직업과 가내노동의 공존은 로마의 농장이 상당 정도 자급자족적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가내부문에 특유한 여성의 직업이 열거된 것은 진정한 노예제 사회 기간 중 농장에 여자노예가 정규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表 1〉은 로마노예의 다양한 기능을 묘사하고 있으며 노예들이 자세하고도 특정한 위치에 배분되었던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의 가내노예의 직업은 〈表 2〉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양하고 특수한 면모를 보인다.

〈表 1〉과 〈表 2〉는 노예들이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장인의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자유민과 노예가 동종의 직업에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군대를 빼놓으면 노예들에게 배제된 직종은 없었던 것이다

〈表 1〉『학설휘찬』(Digest) 33~7에 나타난 農村奴隸의 職業

1. 새잡이	13. 집사장	25. 정원사
2. 쟁기꾼	14. 집사	26. 什長의 妻
3. 도량치기	15. 시종	27. 석공
4. 양치기	16. 도공	28. 양모기술자
5. 소치기	17. 식모	29. 청지기
6. 剪枝하인	18. 천바래고 다듬는 하인	30. 가정부
7. 산림지기	19. 방앗간업자	31. 찬모
8. 사냥꾼	20. 노새풀잇꾼	32. 일꾼 살피는 찬모
9. 배고는 사람	21. 문지기	33. 빵굽기겸 이발전담 일꾼
10. 감독관	22. 견습웨이터	34. 대장장이
11. 하녀	23. 청소부	
12. 물배달꾼	24. 가구담당하인	

〈表 2〉 上流層 家計의 家內奴隸 職業

1. 손님을 선별하는 일을 맡은 하인	14. 천 바래고 다듬는 하인	27. 조각품 다루는 하인
2. 마부	15. 그림과 흥상전담하인	28. 출납계
3. 건축기술자	16. 도금사	29. 풍각쟁이
4. 陽効師	17. 비서(男)	30. 여객시종
5. 가수(男)	18. 대리석 다루는 하인	31. 직조하인(男)
6. 가수(女)	19. 요리 나르는 하인	32. 직조하녀(女)
7. 창고지기	20. 안파의사	33. 이발사(男)
8. 의사(의과의사)	21. 맛감별 전담하인	34. 미용사(女)
9. 요리사	22. 금속세공인	35. 정원사
10. 광대	23. 실잣는 하인	36. 식당관리인
11. 침실전담 하인	24. 옷 수선쟁이(男)	37. 안마사
12. 잔 들이는 하인	25. 유리 다루는 하인	38. 재봉사(男)
13. 방 관리인	26. 창문전담하인	39. 재봉사(女)

(Bradley(1994, pp. 58-65), 〈表 1〉은 p. 59, 〈表 2〉는 p. 63). 그러나 김경현(1999, pp. 46-48)은 정치, 군사에서 노예들의 부수적 역할이 드물지 않았음을 설교하고 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자유민은 있으나 노예는 모두 노동을 하였다. 그리고 자유노동자의 대부분은 해방노예였다. 일하는 조건에서 자유민과 노예가 별 구분이 없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자유노동계약이란 노예를 빌려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자영업 형태의 계약과 이런 점에서 구분되는 것이다(Crook(1967, pp. 179, 194)). 노예노동의 존재가 자유노동의 저항이나 소요를 방지하였고 전문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지적도 더러 있다(Crook(1967, p. 194), Finley(1965)). 그리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노예는 군대만 빼면 모든 곳에서 일을 하였으며 자유민은 거의 자영업자였고 임금노동자는 드물었다(Austin and Vidal-Naquet(1977, p. 102)).

노예는 유아일 때부터 성인시절까지 계속 일을 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임이 더 큰 직종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는 일종의 직업계단을 따라 승진해 가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예노동이 다양한 수준의 숙련도, 전문성, 교육 정도를 요구하였고 노예의 수효도 많을 뿐더러 그 성격과 계제,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 상이하였으므로 로마의 노예들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계급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유주와의 계급투쟁은 생각하기 힘들었다(Bradley(1994, pp. 68-73)).

세분화된 개별작업으로 노예의 직업을 규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같은 일을 여러 명의 노예가 나누어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계율러지기 쉬우므로 특정한 과업을 지정하여 생산 효율을 제고하려 했음이다. 노동의 동기나 유인이 결여되는 문제에 대

하여는 전문화의 방법, 또는 갱 시스템 조직으로 대응하였다(Bradley(1994, pp. 73-75)).

생산부문에서 노예제적 생산은 경영의 대규모화 경향을 가져온다. 소경영에서 노예의 존재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로마보다는 주로 아테네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 로마 지배하의 이탈리아에서는 상당 면적의 국유지가 先占에 대한 법적 보호에 의해 사실상 유력층의 수중에 집중되었고, 해외원정으로 군복무가 점차 장기화되면서 생존이 불확실해진 일부 중소자영농의 토지마저 유력층에 흡수되어, 이른바 大土地 所有(latifundia)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 조건들은 토지소유와 농업을 안전하면서 품위를 지키는 투자 형태로 여기던 당대의 가치관과 결합하여 농업부문에서 노예제 대경영을 창출했던 것이다(김경현(1999, pp. 48-51)).

노예노동과 관련하여 페쿨리움(peculium, 特有財產)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쿨리움은 본래 법적으로 재산권이 없어야 할 노예들이 “所有한” 재산을 지칭하는 바, 이는 주인이 궁극적인 소유권을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所有”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는 페쿨리움에서 발생한 과실의 사용권을 가졌으며 제3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권력과 특전을 행사할 수 있었다(Crook(1967, pp. 188-189)).

할당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노예는 산출중 주인 몫을 제한 부분을 페쿨리움에 첨가할 수 있었으나 토지 자체는 그들의 권한 밖이었다. 물론 노예제 사회가 아니더라도 경작권자가 소유권이 없었던 예가 많지만 자유민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사용권을 획득하나 노예는 주인의 이해관계와 허락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예외적인 경우로 고려시대 외거노비의 토지소유는 그렇지 않았다(Patterson(1982, pp. 182-183)).

도시부문의 노예들에게 토지에 관한 제한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노예들은 제조, 상업, 금융업,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여 때로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모았다.

페쿨리움의 광범한 존재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예가 주인에 이롭게 사리 효율적으로 노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재산 소유 욕구의 대리만족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근면할수록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살 수 있다는 장기적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주인도 궁극적 권리 to 유지하였으므로 잊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은 많았던 것이다. 대토지 경영에서 십장이나 감독, 도시 상공업에서 주인의 대리인 등에게 페쿨리움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Patterson(1982, pp. 184-186)).

#### 4. 奴隸的 瘢의 質

고대 노예제 사회에 관한 자료의 성격상 노예적 瘢의 조건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거시지

표들뿐 아니라 노예 관련 법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예들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자주 매질을 당했는지, 폭력 사용의 빈도를 결정하는 내부적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의식주 생활이나 건강, 그리고 노예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도 역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잔존하는 사료는 법규만이 아니라 사회사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중시하는 민담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솝우화로 유명한 이솝의 전기가 가끔 인용된다. 토끼와 거북,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새와 양치기 등 풍자해학을 생산했던 이솝은 B.C. 6세기 사람으로 알려진다. 이솝의 전기는 A.D. 1세기 로마시대의 이집트를 무대로 한 민담으로서 ‘지어낸 이야기(fiction)’ 이지만 사회사가의 극찬을 자아낸다. “이솝의 전기는 내가 여태까지 알아 왔던 로마 노예제에 대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이들을 읽는 독자들과 경험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이다”(Hopkins(1993, p. 27)).

이솝의 전기(*Life of Aesop*)가 보이는 것은 철학자 주인 산투스(Xanthus)의 교조적이고 이성적인 면과 그보다 단순하지만 약삭빠른 노예 이솝의 입장, 그러한 관계이다. 정확한 지시와 ‘준법투쟁’, ‘사모님’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풍자는 보기 드문 큰 작품이다. 이곳에서 시사하는 바는 노예의 포기가 아닌 반항, 태업, 그리고 주인의 노예에 대한 공포심, 더 크게는 반감이다. 노예제가 존속하는 것은 일종의 상호존중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믿게 해 준다. 결국 주인-노예 관계에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어느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솝의 전기뿐 아니라 여러 “非正規的” 사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아직 남는다. 3장의 수량적 근거에 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접근에 따라 사료가 풍부한 법규 쪽으로 눈을 돌리자.

노예에 대한 통념과 노예 관련 법규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예상태가 의미하는 기본원칙은 노예가 여하한 법률행위의 주체로 될 수 없으며 그저 주인의 사유물이라는 것이었다. 첫째, 노예의 사실흔은 결코 그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것은 한쪽 당사자가 자유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둘째로 노예는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소송의 원인제공자일 경우에조차 피고의 자격을 갖지 않았다. 평결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주인의 몫이었다. 그러나 노예가 중범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노예를 상대로 고문 취조한 후 대개 종신구금이나 사형으로 처벌하였다. 노예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고문을 통한 것이어야만 효력이 있었다. 셋째로, 노예는 재산의 한 형태이므로 그에 대한 주인의 사유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었다(김경현(1999, pp. 57-58)).

법규들의 원칙이 노예적 삶의 근간을 나타내 준다면, 주인과 노예의 개별적 관계와 심리학적 역할을 말해주는 자료들이 제한적이나마 모아졌다. 주인 노예 관계가 능동적 주인이 전적으로 수동적 노예를 끌고 가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인의 무한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성격 자체 때문에 일정한 제약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주인 스스로의 이익, 추구이다. 노예를 소유하는 근본목표가 노예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인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별칙과 보상의 다양한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 봉사하지 않는 노예에 대한 별의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 극단적인 경우 죽이기까지 — 것이 노예제의 특이성이다. 그러나 죽은 노예나 열악한 생활조건 또는 잔인한 체벌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노예는 쓸모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징벌보다 유인 제공이 봉사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므로 노예주들은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배합하였던 것이다.

두번째 범주의 제약은 노예들 자신에서 나온다. 자유민의 눈에는 권력이 결여되고 고립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노예들은 그들의 행동이 넘어서는 안될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주인 노예 관계를 정규화하고 주인들의 사회적 행위에 상당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그렇다면 주인과 노예, 양측 다 상대방에 적응하였던 것이다[Patterson(1982, pp. 205-206)]. 이들은 상호간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예의 입장에서는 적응이 생존전략이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게 대하면 반항을 야기할까 항상 걱정하였다.

무조건적 복종이 의미하는 노예의 삶이란 폭력과 소외, 불명예 그리고 주인의 변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위태로움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집단적, 개인적 반항의 기록이 다수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다. BC 73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그 규모(수만명)나 지속 기간(2년 가까이)에 있어 특유한 경우라 할 수 있으나 반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저항도 많았다. 자살, 노예주 살해 등 극단적인 것으로부터 도주, 자해, 방화, 기물파손,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피병, 태업, 사보타지 등등. 물론 저항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부담이 컷지만,(2) 그저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 로마 노예의 전형은 아니었다. 계급적 유대감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19세기에서야 보이는 산토 도밍고의 노예반란같은 것은 고대에서 생각할 수 없는 특수 경우이고 고대 노예들은 집단적인 독립보다는 개인적 독립을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저항은 로마 노예제 역사에서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Bradley(1994, ch. 6, esp. p. 131)].

(2) 예를 들어 노예주를 살해한 경우 살인자와 “같은 지붕 밑에 사는” 모든 노예를 처형; 도주의 경우 자유민을 가장했을 때 — 피부색이 같으므로 쉬웠을 것 — 더 가혹한 처벌.

주인 노예 관계는 노예주의 심성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라 노예의 생활조건도 달라졌음은 분명하다. 물론 노예가 일하는 농장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더욱 근본적인 요인일지도 모른다(Finley(1983, p. 93), Patterson(1982, p. 206)). 그러나 노예주의 심성에 영향을 미쳤을 당시 사회사상의 내용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적 철학의 전파로 로마노예제가 점차 쇠퇴했다는 설이 계몽주의적 역사가들에 의해 “目的論的”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 철학의 부흥은 로마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계승하게 하였다. “노예제는 자연스러운 제도이고 따라서 선하고 정당하다”(Finley(1983, p. 119)). 노예제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부자유스러운 것인지의 논쟁은 매우 복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스토아학파의 철학에서는 별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자유인인가 노예인인가의 구분보다 현명한가 우매한 가가 더욱 중요한 구분이며 현명한 자만이 진실된 자유인이라는 것이다. 노예도 영적으로는 자유스럽다는 식의 추상적 논쟁에서는 인도주의적 노예제 개선 운동이 나올 수가 없었다. 노예주의 개인적 행위에만 신경을 쓸 뿐 노예 보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노예는 열등한 집단이라는 집단의식이 매우 견고하였던 것이다.

기독교 사상의 광범한 전파는 로마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인종, 성별, 자유인 이거나 노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구원한다는 교리와는 달리 노예제를 개선한 것이 없었다. 변화의 방향은 오히려 반대쪽이라서 내세를 믿고 현실에 안주하라고 직접 가르친 점이 새로운 것이랄까. 복종을 강조하는 성경구절들을 보라[이 부분은 Bradley(1994, ch. 7)을 원용한 것].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에베소서 6:5]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22]

무릇 명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모데전서 6:1]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18]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열려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21]

요컨대 기독교 사상은 제도로서 노예제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노예상태는 원죄의 결과이고 “奴隸制는 神의 意志”인 것이다(Bradley(1994, p. 151), Davis(1966, pp. 17-18)).

사회사상이 노예 보호 차원의 인도주의적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인도주의가 노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속량을 통해 자유를 부여하였다는 식의 설명도 받아들 이기 곤란하다. 실제로 노예제 로마의 속량은 매우 선택적이었고 시간이 감에 따라 빈도 가 늘어나지도 않았으며 그나마 복종을 유발하기 위한,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속량은 代價(oprae)가 있었으므로 노예들이 몸값을 저축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을 것이었다. 속량은 노예제를 쇠퇴시켰다기보다 강화시킨 면이 컸다(Bradley(1998, p. 195)). 고문의 영역에서 보면 노예의 위상이 개악되었다. 근대적 의미 의 자유주의적 진보를 로마노예제·역사에서 찾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노예제에 대해서는 균제상태의 심성이 지배적이었고 변할 수 없는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였다. 로마인들에게 노예제는 “特異한 制度”(peculiar institution)가 아니 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이에 의해 측정되고 판단되는 “標準”이었다. 이는 사회와 사회적 범 주화에 대한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Bradley(1994, ch. 8, ch. 9, p. 181)).

## 5. 古代 奴隸制의 衰退

사회사상과 도덕관념의 변화에서 고대노예제 쇠퇴의 연원을 찾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2 장에서의 접근을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노예제에 적합한 필요충분조건이 언제 어떻게 쇠퇴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로마노예제는 기원 2세기에 위기 국면을 맞아 4세기에 오면 쇠퇴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흔히 이야기된다. 그런데 “衰退”라는 것은 무엇인가. 노예제는 권력관계이지만 또한 다양한 기능, 특히 노동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사회가 노동을 필요로 하는 한 노예제는 일거에 소멸할 수는 없고 다른 제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로마제국 노예인구의 양적 감소 속도는 완만하였다. 그렇다면 변화는 질적 측면, 즉 노동의 지위와 조직에 있었다. 신대륙 노예제가 “廢止”된 반면 고대노예제는 “衰退”하였다. 신대륙 노예노동이 자유노동에 의해 대체되었다면 고대 노예제는 다른 형태의 예속노동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sup>(3)</sup>

관습적으로 제시되는 몇 가지 설명은 쉽게 기각할 수 있다. 우선 인도주의적 논지; 스토아 철학이건 기독교건 도덕적 노예폐지론은 실재하지도 않았고 효과도 없었다. 오히려 속량을 제한하는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둘째, “征服 理論”; 정복활동이 한계에 달한 결과 노예 공급이 감소하고 노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노예제 생산이 경제적 타당

---

(3) 이 장은 별도의 지적이 없는 한 Finley (1983, pp. 126-149)에 의존하였다.

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복전쟁이 거의 끝난 기원 1세기 초반에 노예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노예 공급은 이후에도 노예 양육이나 遺棄兒의 습득, 납치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유지되었다는 점, 해외원정과 정복이 끝난 후에도 전쟁은 지속되었다는 점, 노예무역이 특히 게르만세계에서 많은 노예 공급을 가져왔다는 점들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노예 공급이 감소했다는 사실도 분명치 않은 것이다. 노예가격이 상승하였다든 자료 자체도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혹시 노예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급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측면이나 다른 요인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노예제의 타당성이 상실되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은 구조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달리 말하면 노예제의 역사를 보기 위해 그리스 로마 사회의 마지막 몇 세기의 총체적 역사를 보아야 한다.

2장에서 노예제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① 항구적 노동력 상비가 필요할 만큼 대규모 단위로 집중된 토지의 사적 소유, ② 상품 생산과 시장의 발달 ③ 대안적 내부노동공급 가능성의 부재를 들었다.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소멸해 갔는가를 따져보면 노예제 쇠퇴 설명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부문을 별도로 분석해야 하며, 심장부를 벗어나면 소농 및 노예가 아닌 형태의 예속노동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로마제국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소유규모는 점점 커져서 부유층에 토지 소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농이 점차 사라지고 중농과 대농이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 자체가 심장부에서 노예제가 쇠퇴하고 주변부에서 다른 형태의 예속노동이 공고화되는 노동 조직 패턴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상품 생산과 시장 발달의 정도는 어떠했는가.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한 소농, 소작인,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의 구매력은 탄력성이 부족하였고, 시장의 크기는 정복과 새로운 영토의 편입에 의해서만 확대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장 확대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미 정지한 것이다. 상품생산은 중농 이상의 경영에서 보편적이었으나 제국시기를 통하여 감소추세에 있었다. 이는 조세의 현물납, 군대와 관료들 보수의 현물 지급 등의 추세로써, 또 부유층들이 특히 게르만족 침입에 노출된 지역에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함으로써 도시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의 생산이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추세로써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지중해 경제의 특성이 지역마다 유사하여 제국이 동질화되면서 교역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Lopez(1976, p. 7)).

내부 노동 공급 가능성의 증가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로마제국의 역사에 있어 정치-군사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아마도 노예노동이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서서히 대체되어 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층민이 “自由契約”이 아닌 조건하

에서 남을 위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저항하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아우구스투스의 군주정 수립 이후 시민권의 본래 의미가 차츰 소멸하였다. 즉 정치적 권리가 축소되었고 자원입대가 징병을 대신하면서 청년층의 부담이 줄어든 대신 동시에 국가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이었던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원 2세기에 上層民 (honestiores)과 下層民(humiliores) 구분의 공식화에 의해 단적으로 상징된다. “法 앞의 不平等”이 형법에 자리잡은 것이다. 국가는 농민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전투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농민의 돈은 계속 필요로 하였다. 관료제가 비대해지고 내전과 외적 침입으로 토지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었으며 하층민에 부담이 더 심해졌다. 전쟁과 세금의 이중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민들은 지방토호에 의존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생겨난 것이 파트로시니움(patronum)이라는 제도이다. 보호와 구호의 대가로 농민들은 자신과 자기 재산에 대한 지주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속주에서 콜로누스(colonus), 곧 예속적 소작농이 출현해 결국 대세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지주의 토지에 계박된 채 소구획지를 경작하여 현물 또는 화폐지대를 내거나 분의소작을 하였다.

도시에서는 시장 크기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사안, 즉 국영공장과 라티푼디움에서의 공업생산에 의해 대규모 제조업이 대체되었고 쇠퇴하였다. 이 결과 都市 平民 (plebs urbana)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요약하여 내부 노동 공급의 존재가 가진 자들로 하여금 노예노동을 보완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고대 말기의 세계는 노예가 다수 존재하였지만 더 이상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다. 노예들은 농촌의 대규모 생산에 지배적이지 않았고, 도시의 대규모 생산은 국영공장으로 축소되었다. 노예들은 더 이상 권력자의 주된 재산소득의 원천이 아니었고 가내에서나 두드러진 존재였다. 고대노예제가 신대륙노예제나 다른 사회의 다양한 예속노동과 어떻게 달랐는가, 특히 조선노비제와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더욱 뚜렷이 밝히는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이영훈·양동휴(1998), Rhee and Yang(1999)].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5

팩시: (02)886-4231

E-mail: dyang@plaza.snu.ac.kr

## 參 考 文 獻

- 김경현(1999): “서양 고대세계의 노예제,” 역사학회편, 『노비, 노예, 농노 — 비교사적 검토』, 일조각.
- 이영훈·양동휴(1998): “조선 노비제와 미국 흑인노예제: 비교사적 검토,” 『경제논집』, 37, 2·3.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4.
- Austin, M.M., and P. Vidal-Naquet(1977):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Ancient Greece: An Introduction* trans. by M.M.Austi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adley, Keith(1994): *Slavery and Society at Ro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Ancient World,” in Seymour Drescher and Stanley L. Engerman(eds.), *A Historical Guide to World Slave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ook, J.A.(1967): *Law and Life of Rome, 90 B.C.-A.D. 212*,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avis, David B.(1966): *The Problem of Slavery in Wester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uncan-Jones, Richard(1982): *The Economy of the Roman Empire: Quantitative Studie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ley, M.I.(1965): “Technical Innovation and Economic Progress in the Ancient World,” *Economic History Review*, 18, August.
- \_\_\_\_\_ (1975): *The Ancient Economy*, Chatto & Windus; 지동식역(1993), 『서양고대경제』, 민음사.
- \_\_\_\_\_ (1983): *Ancient Slavery and Modern Ideology*, Pelican Books, Chatto & Windus (1980).
- Fisher, N.R.E.(1993): *Slavery in Classical Greece*,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 Hopkins, Keith(1993): “Novel Evidence for Roman Slavery,” *Past and Present*, 138, February.
- Lopez, Robert(1976): *The Commercial Revolution of the Middle Ages, 950-13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erson, Orlando(1982): *Slavery and Social Death: A Comparativ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Rhee, Young-hoon and Donghyu Yang(1999): “Korean *Nobi* in American Mirror: Yi Dynasty Coerced Labor in Comparison to the Black Slavery in the Antebellum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to the Economic History Workshop, UCLA, November.